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무역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Strategies of Rules of Origin in
Korean FTA



지도교수 나 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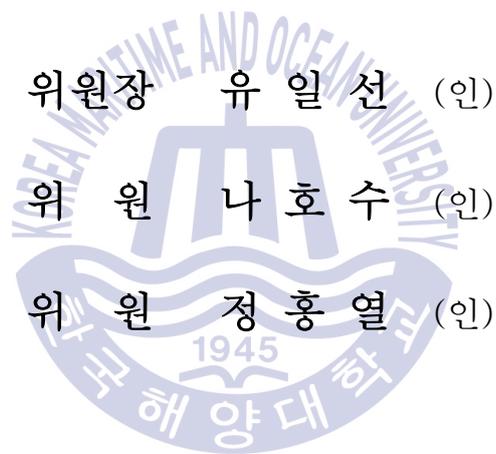
2016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강 현 우

본 논문을 강현우의 무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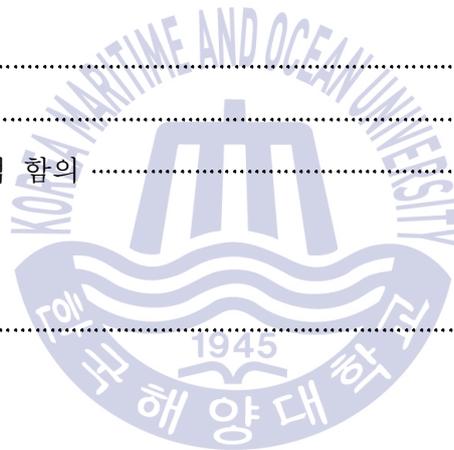
2015年 12月 00日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ii
1.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2.1 연구의 범위	3
1.2.2 연구방법	3
2. 원산지 규정의 의미 및 중요성	4
2.1 원산지 규정의 의미	4
2.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5
3.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무역효과	7
3.1 원산지 규정과 간접적 무역효과	7
3.2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과 무역효과	8
3.3 원산지 규정과 투자구조	9
4. 원산지 규정의 유형과 검증	11
4.1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	11
4.2 실질변경기준 비교	12
4.3 FTA의 원산지 규정의 유형	14
4.4 FTA의 원산지 증명	15
4.5 FTA의 원산지 검증	16

5. FTA 원산지에 관한 기존 연구	17
5.1 이론적 연구 배경	17
5.2 실증적 연구 배경	20
6. 한국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실증 연구	25
6.1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	25
6.2 FTA별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	26
6.3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활용율	29
6.4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실증연구	29
7. 결론	33
7.1 연구의 결과	33
7.2 연구의 정책적 함의	33
참고문헌	35



A Study on the Utilization Strategies of Rules of Origin in Korean FTA

Kang, Hyun-Woo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make a literature survey to understand the testing methods and some characteristics of rules of origin in terms of Korean FTA. Also we introduce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s about rules of origin in Korean FTA.

Then this study used the existing statistical data, related to Korean rules of origin such as FTA utilization rates, rigorness index, complexity index and tariff rates. Through the linear regression methods, we try to find the facts related to the spaghetti bowl effects in Korean FTA. We want to know whether the spaghetti bowl phenomena appear in Korean FTA or not.

Our study shows that Korean FTAs have the spaghetti bowl effects during early FTA periods before 2008.

Our empirical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more complex rules of origin show the more serious spaghetti bowl effects. So the Korean government will make some efforts to unify the more complex rules of origin under the more

FTAs. Also the government needs to analyze the complex rules of origin and introduce them with very easy contents.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void the complex rules of origin and neglect them. They are not willing to utilize them because of heavy opportunity costs. So more incentives are given to thes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Secondly, the higher tariff rates induce the more utilization of rules of origin. The bigger differences between privileged and non-privileged tariff rates give some incentives to utilize the complex rules of origin even if more FTAs make Korean rules of origin more complex. This means that non-privileged tariff rates have strong protective effects which can protect domestic industries. From this result, we have to analyze the FTA results to harm the domestic industries with comparative disadvantages. We have to minimize the harmful effects to influence the domestic industries.

Thirdly, this study has some contributions in that we find out the spaghetti bowl phenomena in Korean FTAs. Many Asian countries have been exposed to more FTAs and rapidly experienced the more complex rules of origin. So these countries are expected to show more serious spaghetti bowl phenomena.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the future studies, we need to extend our data with longer time series. In particular, with recent rigorousness index, we should examine the recent spaghetti bowl effects. Also we need to analyze spaghetti bowl phenomena in terms of individual products instead of aggregate products. We need compare Korean results with foreign results.

KEY WORDS : **rules of origin** 원산지 ; **FTA** 자유무역협정; **rigorousness index** 엄격성지수 ; **complexity index** 복잡성지수 ; **Tariff rates** 관세율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최근 캐나다 및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지금까지 미국과 EU를 비롯한 13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과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¹⁾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FTA를 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과 수송기술이 발달되면서 세계화가 급진전되었고 특히 1994년 WTO가 발족되면서 세계화의 물결은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2007년 도하발전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를 기점으로 WTO협상이 진전이 없자 미국을 중심으로 개별국가와의 FTA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FTA를 서두르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빠르게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향상에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으로 세계전체의 국가가 승인한 FTA 숫자는 109개이며 이는 2002년 36개보다 3배 늘어난 숫자이며 148개의 FTA가 논의 중에 있어 총 257개의 FTA가 추진되었거나 앞으로 추진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WTO의 도하라운드의 다국 간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²⁾ 특히 한국은 세계10위권 무역국으로서 WTO의 기구분담금을 152개 회원국 중 아홉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기구운영과 관련한 역할은 여전히 매우 미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³⁾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확대는 우리나라가 외국시장에 진출하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경우 선진국이

1) FTA체결현황에 대하여는 김영귀 외(2014) p48 참조

2) WTO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안덕근(2012) p58-87를 참조함. 이 보고서에서 WTO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소위 양자 내지 지역주의(Regionalism) 확산에 따라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손상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안덕근(2012), 상계서 p48.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산업의 경우라도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품시장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로 말미암아 외국과의 경쟁이 취약한 산업의 경우 국가적인 대응책과 기업들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1997년 IMF외환 위기와 2007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몇몇 산업들도 내실을 다지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아직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에 대하여는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FTA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의 활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스파게티보울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A의 핵심요소인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성을 조사하고 각 FTA별 원산지규정의 차이점들을 제시하고 원산지규정의 기업들의 활용률과 스파게티보울 현상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회귀분석의 방식을 활용하여 스파게티보울 현상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몇몇 연구들이 스파게티보울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다양한 원인을 찾는 노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스파게티보울 현상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 논문은 제2장에서 원산지 규정의 유형과 검증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FTA 원산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한국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실증

연구를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 등을 학술논문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원산지 규정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원산지규정에 따르는 검증방법들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원산지 규정에 관한 경제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연구들을 이론적인 면과 실증적인 면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스파게티보울 현상을 분석한 연구논문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통계자료를 이용한 스파게티보울 현상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경제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반부에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후반부는 회귀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스파게티보울 현상의 존재 유무를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였다.

제 2 장 원산지 규정의 의미 및 중요성

2.1 원산지규정의 의미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특혜무역협정(PT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⁴⁾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규칙 등이라 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할 수 있다.⁵⁾

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비수혜국이 무임승차(free-riding)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특혜프로그램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특정국가로부터 특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당연히 원산지의 식별이 필요하므로 해당정책의 운영상 원산지규정이 요구되는데,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등의 경우 원산지 식별은 물론 제조대상이 된 상품의 유사상품이나 국내산업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단순히 정확한 무역통계나 수입신고서 작성을 위해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요구하기도 한다.⁶⁾

4) 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5) 원산지규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순태(2015) p95를 참조함.

6) 김한성 외(2008) pp. 28-31

최근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라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PTAs의 급속한 확대로 협정 당사국 간에 관세철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당사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반드시 원산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산지규정은 체약상대국 이외 국가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 특혜관세 부과에 따른 체약국 간 교역 확대, 관세혜택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반면 PTAs의 종류가 다양하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산지규정의 통일성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무역협정에 가입한 한 국가 내에서도 여러 가지의 원산지규정이 혼재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게다가 원산지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기술적·객관적이며 불필요한 무역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불투명하고 복잡한 기준 때문에 제품 생산자나 관세당국에 추가 부담과 비용을 안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PTAs의 범위와 수가 확대되면서 원산지규정 또한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으로 무역왜곡이나 무역장벽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오늘날과 같은 국제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과 국제통상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이른바 원산지 기준은 당해 국가의 이익이나 소비자 및 생산자의 보호 등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원산지제도는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원산지가 역내와 역외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는가 하면 특히 FTA의 급속한 국제적 확산으로 이제 원산지제도가 단순한 통관절차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와 생산방식 그리고 교역의 양상 등 전반적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부상하고 있다.⁷⁾

원산지제도는 자유무역 협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원인이란 점에서 각종 협상에서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존의 칠레, 싱가포르, EFTA 외에 미국을 포함한

7) 이 부분의 설명에 대해서는 정인교, 조정관(2007)을 참조함.

4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인 FTA체결 계획을 갖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여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같은 원산지제도는 각 특혜협정 들마다 상이할 뿐 아니라 체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그리고 차별적 적용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됨에 따라 이를 스파게티 보올이라 지적하기도 한다.⁸⁾

FTA 협정이 운용되면 원산지의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관세율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이 우회수입여부 판정, 관세수입, 양국간 교역 및 투자관계, 국내산업 구조 개편에 영향을 줌으로 FTA 원산지 협상은 관세양허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즉, FTA의 실질적 수혜여부가 원산지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 생산방식과 수출거래 등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은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FTA의 확산, 세계화의 심화 및 다국적 생산 활동의 보편화 현상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역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의 강화는 역내국들이 역외국들의 우회적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자물쇠 역할을 제고 하려는데 그 중 점이 있다. 이에 따라 FTA 원산지규정은 양국간 투자·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지, 국내 민감산업 보호 등을 고려하여 양국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주요 고려요소는 양국간 산업구조·관세율구조 및 교역특성 등이 반영된다. 따라서 FTA 마다 서로 상이한 원산지기준이 도입된다. 원산지 규정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의 정도와 경제적 효과가 파생되는 경로는 수출국과 수입국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경제적 효과와 해당국가의 원산지 세부규정·무역정책·금융정책·경제여건 등에 의해 그 경제적 영향이 제약될 수 있다.

8) Bhagwati Jagdish, "The WTO's Agenda : Environment, Labor Standards, Competition Policy and the Question of Regionalism." In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 Challenges Ahead.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996, p. 15.

제 3 장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무역효과

3.1 원산지 규정과 간접적 무역효과

원산지규정은 그 자체가 무역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무역조치와 원산지규정이 결합할 때 효력이 발휘된다. 다시 말해서 원산지 규정은 각종 무역조치의 효과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킴으로서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접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원산지규정이 FTA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개념화 또는 계량화하기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역의 흐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원산지규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산지규정이 아무리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속되어 있는 무역조치가 별다른 차별효과가 없다면 원산지규정의 효과도 거의 없게 되며, 반대로 해당 무역조치가 강력하면 원산지규정 효과도 그만큼 강력해진다.⁹⁾

원산지 규정의 역할이 중요하게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보다도 관세 상의 차별이 역내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때이며, 특히 특정 상품에 대한 FTA체결 이전의 역내 관세율이 고율일 때 그 효과는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당해 동종 상품이 원산지규정에 의해 역외산으로 판정되면, 역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관세로 거래되는 역내상품과의 가격경쟁에 있어 열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산지규정은 역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반면 역내 교역은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원산지규정은 역내 특정 부품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만약에 원산지규정에서 역내 관세혜택을 수혜 받기 위한 조건으로 특정비율의 역내 산 부품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 역내 외 생산자들은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역내부품 조달 비율을 충족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해당 역내 부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내 투자의 증가도 가져온다. 원산지규정에서 역내 산으로 인정받기

9) 김한성 외(2008)pp52-62

위한 조건으로 역내에서 특정 비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역외의 생산자들은 특혜관세 혜택을 수혜받기 위해 자연히 역내에 생산시설 등의 이전을 통해 역내부가가치율을 높이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3.2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과 무역효과

NAFTA의 경우 무관세적용기준으로 국내부가가치 비율을 사용했던 사례를 보면, 부가가치 계산에 자본 비용은 고려되지 않고 노동비용만 포함되도록 하여 역외 투자기업을 역내기업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였고 이러한 차별적인 조치가 무역은 물론이고 투자흐름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게 한 사례가 그것이다. 이는 강화된 원산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역외기업들이 역내에 부품생산과 조립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자 한 것이며 실제로 NAFTA 협상이 개시되자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캐나다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對멕시코 투자를 확대하였다.¹⁰⁾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은 지역통합의 발전과 역내 산업보호를 위해 지역 내 원산지 판정요건으로서 높은 역내부가가치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역외 상품의 역내 시장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협정마다 원산지 규정이 각기 다르며,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그리고 차별성으로 원산지규정의 적용과정에서 상당한 무역장벽적 성격을 지닌 효과를 초래한다. 의류를 예로 들면, 예컨대 원단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의류로 봉제한 후 특정한 지역협정 역내로 수출한다고 하자, 만약 의류의 부가가치가 디자인에서 나오고 이는 재단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의류의 원산지는 재단한 나라인 한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품을 수입한 국가의 원산지 규정이 최종적으로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봉제한 나라인 중국이 원산지가 된다. 만약 그 지역협정에서 의류에 쿼터를 적용하고 있다면,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의 여부 그 자체가 수출가능성 여부를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LG전자가 EU에 TV를 수출하다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반덤핑관세 조치를 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EU측은 LG의 터키 공장에서 생산하여 EU로

10) Anne O. Kruger. "Free Trade Agreements as Protectionist Devices: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 No. 4352, Cambridge, MD, 1993, p. 8.

들어오는 TV에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TV 조립국을 원산지로 결정하는데 비해 EU는 브라운관(CRT)을 만든 나라를 원산지로 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서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한국의 하이닉스 전자와 삼성전자를 상계관세 부과대상으로 상공부에 제소하였다. 마이크론사는 제소대상 물품의 범위에 한국에서 웨이퍼 가공공정과 반도체 조립공정을 거친 것과 한국에서 전 공정을 거치고 다른 나라에서 후처리 공정을 수행한 것,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전 공정으로 거치고 한국에서 후처리 공정을 수행한 것 모두를 제소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WTO 통일원산지규정을 들어 반도체의 경우 전 공정에 원산지가 부여된다고 주장하여 다른 나라에서 전 공정을 거친 후 우리나라에서 후처리 공정을 수행한 것을 제소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특혜원산지규정의 무역에 대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와 고려하는 경우를 나누어 한국과 일본간 FTA를 사례로 하여 추정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입을 각각 171.45%, 39.64% 증가시킬 것이나, 특혜원산지규정이 고려되면 농산물을 230.81%가 증가하는 대신 공산품의 수입은 34.73%가 하락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하는 등 원산지규정이 FTA 전체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원산지규정이 FTA 운용의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3.3 원산지 규정과 투자구조

원산지 규정에 의해 투자구조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따라 기업의 투자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가 발생하게 되어 투자구조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즉 소지역간의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역내산 제품에 관하여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역외국이 이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역내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 이에 따른 투자구조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 기존의 기업보다는 최신설비, 연금에의 낮은 지출부담, 강성노조의

11) 전계서 정인교, 조정란(2007) pp. 50-68

회피 등 양호한 조건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존기업의 도산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수입대체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시장을 분할하고 이러한 분할된 시장에서 생산 활동도 수행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과잉생산 설비의 문제와 이에 따른 생산설비의 활동 저하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¹²⁾

산업구조의 왜곡도 부작용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경우 생산단계 중 특정부품에 특화하기 때문에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생산단계를 연구 및 개발, 중간재생산, 최종재생산, 마케팅 및 유통으로 나눈다면, 어떠한 생산단계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 졌다거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다고 원산지 규정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생산과정에 특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산업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FTA는 회원국 간의 관세나 비관세 조치에 있어서의 특혜조치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산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품의 판정을 결정하는 원산지 규정은 협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원산지 규정은 협정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한계 분야라는 점에서 FTA 협정 체결 시 자국에 유리한 원산지기준을 삽입하기 위하여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진행되는 분야로서 매우 중요한 협상과제이자 그 결과가 큰 의미를 지닌다.

12) 김한성 외(2008) pp.67-68

제 4 장 원산지 규정의 유형과 검증

4.1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

FTA의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통상 비특혜원산지규정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FTA 원산지규정이 FTA 특혜관세 혜택의 역외유출 내지 제3국 기업에 의한 무임승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¹³⁾

최근에는 기업들이 원재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하거나 제품의 글로벌 생산(global manufacture)을 확대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을 정하는 것이 원산지규정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당사국의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시 말하면 원산지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역내국간 산업경쟁력 수준과 교역규모 등을 기초로 교역활성화, 우회수입방지, 투자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는 어느 제품이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과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변경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method),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criterion), 특정공정기준(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13) 정순태(2012), 전제서 pp.101-106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임.

processing operation) 또는 기술테스트방법(technical test method) 등 3가지 기준이 이용되고 있다.

이 중 부가가치기준에서는 부가가치의 비율을 계산하는 세부기준으로 수입산 함량(MC: Import Content), 국내산 함량(DC: Domestic Content) 또는 역내부가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부품 가액(VP: Value of Parts) 등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변경기준을 보완하거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소허용기준(deminimis rule) 또는 용인기준(tolerance rule), 누적기준(cumulation rule), 롤업원칙(roll-up principle or absorption/takeover principle), 추적심사(tracing test), 불인정공정(insufficient operations) 또는 최소가공기준(minimal process), 세 번변경기준 특례, 부속품 및 예비부분품, 직접운송법칙(direct consignment) 등과 같은 보충적인 원산지 결정기준도 적용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역외가공인정(outward processing), 재수입물품,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간접재료,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원산지 특칙규정(sector-specific special rules) 등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4.2 실질변경기준 비교

원산지 결정을 위한 기술적 요건들은 특정 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우 어느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으로서 적용목적에 따라 혼용하거나 보충하여 사용하고 있다.¹⁴⁾ 그 중 실질변경기준으로 사용되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은 해당상품의 본질적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세번변경기준이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세 번(tariff classification)과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HS 4단위(heading) 혹은 6단위(subheading)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2단위(chapter)에서의 세번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

14) 정인교, 조정란(2012) p27참조.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특정공정기준은 상품의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생산공정이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에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특정 재료의 사용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둘 수도 있다.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높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번변경기준에서 사용되는 HS 코드는 상품의 분류를 위한 코드이지, 원산지규정을 위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세번변경기준은 특혜원산지 판정을 좌우하는 중요부품의 관세번호분류가 국가마다 다른 경우가 존재하고, 예외품의 표를 기술적 진보, 경제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최신의 것으로 경신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입국 양쪽에서 동일한 품목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공정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 방식 및 공정의 선택을 상당히 제약할 뿐 아니라 그 요건이 매우 복잡하여 원산지를 부여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을 산정할 경우 많이 채택되고 있는 거래가격방법(TV: Transaction Value method)은 계산이 편리한 반면에 관계자간의 거래시 왜곡가능성이 있다. 특히 순비용방법(NC: Net Cost method)은 계산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높을 경우 생산자가 원산지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역내 부품이나 재료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역외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생산자로서는 보다 경쟁적인 역외부품이나 재료의 글로벌 아웃소싱에 있어 그만큼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최소허용기준(또는 미소기준)을 함께 채택할 경우 FTA 체결에 따른 원산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역내무역이 추가로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4.3 FTA 원산지 규정의 유형

FTA 원산지규정은 크게 PANEURO와 NAFTA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두 방식 모두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입 방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원산지규정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정해 왔다.¹⁵⁾ PANEURO 유형의 경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특혜원산지협정안을 조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997년 이후 PANEURO 유형이 EU와 체결되는 신규 FTA 국가들의 원산지규정에 적용되고 있는데, 예외조항을 포함시킨 HS 4단위의 세번변경기준과 누적기준을 많이 이용하면서도 특정공정기준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PANEURO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산 원부자재 가치(MC)와 공장도거래(ex-works)가격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최소기준은 상대적으로 높고 누적조항도 양자누적을 비롯한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을 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NAFTA 유형은 NAFTA 회원국과 주요 국가들 간의 FTA 체결에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HS 4단위 변경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보충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정공정기준은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NAFTA 유형은 예외나 보충기준으로 최소허용기준에 대한 수준은 낮으나, 예외품목이 많으며 롤업(roll-up)원칙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누적조항은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만을 적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아시아의 경우 고유한 모델이 없어 PANEURO와 NAFTA 유형이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FTA 체결이 다각적으로 진행되면서 PANEURO나 NAFTA 유형과 같이 동아시아 국가의 원산지규정 모델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5) 김한성 외(2008) 전게서, pp130-132.

4.4 FTA의 원산지 증명

원산지규정의 이행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통관 비용의 최소화, 원산지규정 요건 충족 여부, 우회 수입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출 전(前) 원산지증명 단계와 수입 후(後)원산지 검증 단계가 있다.¹⁶⁾ 원산지증명은 수출 전에 수출국가에서 FTA 특혜무역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증명 주체에 따라 기관발급제와 자율발급제로 나뉜다. 기관발급제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발급신청을 받아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율발급제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물품의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관발급제는 ASEAN, 일본 등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공신력이 높아 우회수입방지 기대효과가 있으나, 수출신고와 증명서발급 절차의 중복, 시간과 비용의 증가, 실질적인 확인이 없는 요식행위 등의 단점이 있다. 실례로 기관발급을 시행하고 있던 EU의 경우 기관 발급이 효과적으로 우회 수입을 방지하지 못하고 협정체약국가 간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행정적 협조의 실패, 허위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자율발급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자율발급제는 미주지역에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발급절차의 신속과 편리, 증명서 발급비용의 절감,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허위증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FTA를 통한 교역촉진과 수출입자의 편익을 위해서는 발급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율발급제가 보다 적합할 수 있으나 허위증명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수출자와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책임 명시, 현지검증제도, 원산지허위증명에 대한 처벌 강화, 원산지사전검증제, 자료보관의 의무 등의 보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16) 원산지증명의 검증방법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장근호(2015), pp.235-251를 참조함.

4.5 FTA의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은 수입 후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수입된 상품의 특혜 원산지규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계로, 검증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 간접검증, 그리고 제한적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검증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하는 방식을 말하며, 간접검증은 수출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적 간접검증은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이 절충된 방식으로,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생산자나 수출자의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그러한 검증과정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참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검증방식은 협정 회원국가의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상황과 관세제도, 검증의 효율성, 검증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한 NAFTA의 검증절차는 크게 서면조사와 현지방문 조사로 구분된다. 검증의 첫 번째 단계로 수입국은 타방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한 관련 증빙서류 등의 필수 정보를 요청하고 서면질의서를 통보한다. 서면조사 단계만으로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수입 당사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입국이 현지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조사 수행에 앞서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의 관세행정기관 등에 이를 서면으로 공지해야 하며, 생산자나 수출자로부터 현장방문 검증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장검증 통보를 받은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현지방문조사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통보를 받은 수출자나 생산자는 현지방문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알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또는 양국가가 합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연기가 가능하다. 현지방문 조사 후 수입국은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검증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만약 검증결과 수입되는 해당 물품이 특혜 원산지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일 경우 특혜관세대우 부여를 중지할 수 있다.

제 5 장 FTA 원산지에 관한 기존 연구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FTA와 관련된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연구 대부분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바람직한 원산지규정을 제시하거나,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료에 기초하여 이론적 배경과 실증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5.1 이론적 연구 배경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은 관세장벽이 낮추면서 역내제품과 역외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역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면서 원산지규정은 역내국간에는 교역과 투자 증대 및 특정 부품산업의 발전 등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연구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무역굴절은 낮은 역외관세를 부과하는 회원국을 통해 수입된 재화가 역외관세가 높은 회원국으로 무관세로 재수출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회원국간 공동의 역외관세(external tariff)를 부과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s)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없으나, 역외 국가에 대해 회원국 각자 독자적인 역외관세를 부과하는 FTA에서는 우려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이 무역굴절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생산과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FTA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역외국(저비용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역내국(고비용의 생산국)으로 전환될 수 있기

17) 김한성 외(2008) 전거서 pp.52-69의 내용을 참조함.

때문이다.

Krueger(1999)는 이와 같은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산지규정의 '숨겨진 무역장벽'(hidden protection)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특히 NAFTA를 예로 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기업이 NAFTA의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값비싼 미국산 중간재를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미국의 중간재 산업이 보호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¹⁸⁾

원산지규정의 보호효과는 FTA 체결국뿐만 아니라 역외국의 생산, 교역, 더 나아가 투자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서는 Krishna and Krueger(1995)와 Falvey and Reed(1998)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Krishna and Krueger(1995) 연구의 초점¹⁹⁾은 NAFTA 원산지규정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으며, FTA 체결에 따른 교역과 후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생산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데, 이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중간재 조달이나 생산방식을 변경해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 원산지규정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binding)와 그렇지 않은 경우(not binding)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역외국 생산자에 비해 역내국 생산자가 효율적인 경우, 즉 원산지규정이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비용에 변화가 없다. 물론 원산지 증명 절차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서는 행정비용 부담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Krishna and Krueger(1995)는 최종재가 회원국 중 한 곳에서만 생산되는 경우를 가정함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역내국 중 최종재 생산지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Falvey and Reed(1998)는 FTA 체결전 회원국 모두

18) Krueger, A. O. 1999. "Free Trade Agreements as Protectionist Devices: Rules of Origin." , NBER Working Paper No. 4352, Cambridge, MD.

19) Krishna, K. and A. O. Krueger. 1995. "Implementing Free Trade Agreement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A. V. Deardoff and R. M. Stern eds.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pp. 149-187.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최종재를 생산하는 경우와 모두 생산하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원산지규정이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²⁰⁾ 종합하면, Krishna and Krueger(1995)와 Falvey and Reed(1998)의 연구에서 원산지규정 적용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특징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질수록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값비싼 역내산 중간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생산비용의 증가가 오히려 역내산 중간재 수요의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이 역내산 중간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해당 산업의 원산지 결정기준 엄격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Rosellon(2000)은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역내산 중간재 수요가 증가함을 보였으나,²¹⁾ Ju and Krishna(2005)는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오히려 역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²²⁾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접근의 분석 결과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원산지규정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풍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연구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연구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원산지규정의 효과가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역내 중간재 산업보호 효과, 더 나아가 역내국간 교역확대와 역내외국가로부터의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 될 경우는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오히려 생산, 교역 및 투자에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FTA 원산지규정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0) Falvey, R. and G. Reed. 1998. "Economic Effects of Rules of Origin."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34, pp. 209-249.

21) Rosellon, P. L. 2000. "The Economics of Rules of Origin."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9. pp. 397-425.

22) Ju, J. and K. Krishna. 2005. "Firm Behaviour and Market Access in a Free Trade Area with Rules of Origi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8, pp. 290-308.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역내외 국가간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원산지규정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산지규정이 FTA 체결에 따른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실증연구가 NA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한국 FTA에 적용하여 해석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 국내 연구에는 정인교(1999), 정인교 외(2007)를 들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연구를 포함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실증 연구의 주요 내용과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5.2 실증적 연구 배경

원산지규정에 대한 실증적 접근은 원산지규정의 시장접근 및 투자에 대한 과급효과 분석과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원산지규정 비용을 추정하는 연구를 포함한다.²³⁾ 이들 연구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처음으로 계량적으로 분석된 Estevadeordal(2000)에 기초한다. Estevadeordal(2000)은 NAFTA에서 마련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제시된 모든 종류의 기준에 대해 엄격성 지수를 부여, 최소 1에서 최대 7점 범위 내에서 지수를 만들었다. 그는 엄격성지수(RI: Restrictiveness Index)와 관세철폐 스케줄(preferential tariff phase-out programme)을 이용하여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²⁴⁾

연구에 의하면 먼저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길수록 원산지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이 관세철폐만큼이나 시장접근 협상(market access negotiation)에서 중요한 무역정책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으로 Estevadeordal(2000)에서는 미국과 멕시코간 관세율 차이가 클수록, 즉 무역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수록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됨을 밝혔다. 이는 많은

23) 김한성외(2008), 전게서, pp. 62-64.

24) Estevadeordal, A. 2000.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No. 34, pp. 141-200.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FTA에서 원산지규정이 도입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역갈절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Estevadeoardal 지수를 이용하여 원산지규정이 시장접근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FTA 체결과 함께 회원국은 역내국간 수출 및 시장접근 기회 확대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즉 FTA 체결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효과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데, 역내국간 무역 증대와 경쟁 촉진, 이와 더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경제성장의 촉진이 기대된다. 그러나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되는 경우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시장접근 확대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Cadot et al.(2006)은 NAFTA의 원산지규정이 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²⁵⁾ 이들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관세특혜수준의 결합효과가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는데, 추정결과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이 감소하는 반면 관세특혜수준이 클수록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 상반되는 효과가 서로 상쇄됨에 따라 NAFTA 체결이 멕시코의 대미수출량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NAFTA의 원산지규정이 관세철폐(시장접근 확대)의 이득을 상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이 FTA 체결에 따른 역내국간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특혜관세와 원산지규정의 준수비용(compliance costs)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관세특혜수준에 따른 혜택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에 드는 비용이 높은 경우 FTA 협정의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관세철폐, 통관절차 등 여타 무역조치와 더불어 특혜원산지규정의 효과를 살펴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Anson et al.(2005)은 멕시코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NAFTA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멕시코 입장에서 NA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 확대 여부를 파악하고자하였다. 이에 따르면 평균 준수비용이 관세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로 평균 약 6%에 이르는데, 멕시코에 대한

25) Cadot, O. and J. de Melo, and A. Portugal-Perez. 2006. "Rules of Origin for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Implications for AFTA of EU and US Regims." CEPR Working paper의 일부를 참조하였음.

평균 관세특혜폭(margin of preference)이 약 4%임을 감안한다면 NAFTA의 원산지규정이 관세철폐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를 이용하여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비용의 최대·최소 상한을 추정하는 Herin(1986)의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기업들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MFN 관세를 사용을 선택함에 따라 FTA 활용도가 낮아진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FTA 활용률간 관계를 이용하여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비용을 간접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FTA 활용률이 100%인 산업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이 준수비용보다 높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FTA 활용률이 0%인 산업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이 준수비용보다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TA 활용률이 0%와 100%인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의 관세특혜폭을 평균한 값이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의 추정치가 된다. Cadot et al.(2002)²⁶⁾, Carrere and de Melo(2004) 역시 NAFTA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 5.06%와 6.16%³¹⁾로 추정하고 있다. Cadot et al.(2006b)은 NAFTA뿐만 아니라 EU의 PANEURO 시스템의 준수비용을 추정, 각각 6.8%와 8%의 값을 얻었다. 이들은 각 FTA별 활용률이 다른 원인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서 비롯되는 준수비용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NAFTA와 PANEURO 시스템의 경우 행정비용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는 약 1.9%인 데 반해 후자의 경우 약 6.8%의 값을 얻고 있다. 이는 PANEURO 시스템의 원산지 확인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평가와 일치한다. Carrere and de Melo(2004)의 경우 NAFTA에 관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구분하여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특정공정기준 충족에 따른 원산지규정 관련 비용이 가장 크고,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내용이 NAFTA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Cadot et al.(2006a)은 단일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이용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26) Cadot, O. and J. de Melo, and B. Tumurchudur. 2006.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in EU and US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An Assessment." World Trade Review, pp. 199-225.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EU와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대상국가,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연합(ACP: Africa Caribbean and Pacific Associables) 국가들간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역내산 인정비율의 변화가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역내산 인정비율을 10% 낮추면 FTA 활용률이 2.5~8.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FTA상의 원산지규정이 역내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이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Estevadeordal et al.(2006)은 처음으로 원산지규정과 FDI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멕시코 제조업 122개 산업을 대상으로 NAFTA 체결 이후 7년 동안 이루어진 FDI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멕시코 내 투자를 결정할 때 NAFTA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고려수단임을 밝혔다. 특히 투명하고 유연한(flexible) 원산지 결정기준이 마련된 산업에 FDI가 유입되고 있음을 보였다.

중간재에 대하여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마련된 산업의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자는 역내에서 중간재를 조달하거나 생산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하므로 FDI 유입이 촉진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유연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도 투자유입이 촉진됨을 밝힌 것으로, 글로벌 소싱 전략에 의존하는 산업의 경우 최종재 산업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유연할수록 중간재 산업에 대한 투자 유입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유연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원산지규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의 주요 내용과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NAFTA 원산지규정에 기초하여 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것이므로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효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활용률을 낮추게 되고, FTA 체결에 따른 자유화 혜택이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주로 원산균형분석모형(CGE: Computerized General Equilibrium) 을 사용하여 FTA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을 고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FTA 체결에 따른 수출량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의 효과를 파악하였는데, 정인교(1999)는 한·일 FTA, 정인교 외(2007)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예상효과를 제시하고 있다.²⁷⁾

먼저 정인교(1999)에서는 FTA에서 원산지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무역굴절 현상이 감소됨을 보였는데, 한·일 FTA 체결시 원산지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한국은대일본 수입을 줄이고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은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오던 역외 수입품이 차단되고, 한국이 직접 수입하면서 관세수입을 확보하게 되어 후생 증진까지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인교 외(2007)에서는²⁸⁾ 원산지규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원산지규정을 고려하는 경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미수출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감소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NA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기초하여 한·미 FTA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estrictiveness)과 FTA 활용률(utilization rate)을 분석함으로써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FTA의 경제적 효과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FTA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 인정을 받아야만 관세철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곧 수출품목의 시장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 현황 분석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²⁹⁾

27) 정인교. 1999. 「지역무역협정의 무역굴절효과 추정방법 모색 - ‘특혜원산지규정’의 측면에서」. 『대외경제 정책연구』, 제3권, 제2호, pp. 115-131.

28) 정인교·조정란.(2007), 전거서, pp. 45-47.

29) 이용근, 안창달 (2011) pp.174-183에서 엄격성지수의 산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였음..

제 6 장 한국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실증연구

본 장에서는 실증연구에 이용되는 엄격성지수와 FTA 활용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이전에 체결된 FTA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장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³⁰⁾

6.1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Estevadeordal(2007)에 의해 처음으로 계량적으로 분석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는 NAFTA에서 마련된 원산지규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³¹⁾,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카테고리별로 최소 1에서 최대 7점까지의 지수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에서 더욱 확대되었는데, 엄격성지수 요건을 제시하였다.

엄격성지수는 기본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지수가 부여되는데, 지수가 높을수록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 먼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H)보다 엄격하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S)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2단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요구되는 경우 각각 6, 4, 2점이 부여된다. 그리고 세번변경기준에 부가가치기준 혹은 특수공정기준이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규정이 더 엄격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 4, 6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부가가치기준 혹은 특수공정기준이 결합되는 경우 각각 7, 5, 3점이 부여된다. 세번변경기준이 요구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7점, 부가가치기준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요구되는 역내부가가치 비율에 따라 4~5점을

30) 김한성 외(2008), 전계서, pp.132-140.

31) Estevadeordal, A. 2000.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No. 34, pp. 141-200.

부여하고 있다.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에서는 상기의 엄격성지수 요건을 이용하여 유럽과 미주지역 12개 FTA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EU의 PANEURO 시스템과 NA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는 [표5-2]와 같다. EU가 체결하는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은 PANEURO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PANEURO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각 품목별 엄격성지수의 평균값이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NAFTA의 경우 엄격성지수가 5.1로, EU의 원산지규정보다 다소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성지수와 세번변경기준 적용 비중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EU FTA와 NAFTA의 세번변경기준 적용비중을 제시비교하였다. NAFTA 원산지규정이 EU의 FTA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적용 비중이 높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이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이 엄격할수록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고 MFN 관세율 사용을 선택함에 따라 FTA 활용도를 낮추게 되고, 이는 FTA 체결에 따른 자유화 혜택이 감소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Estevadeordal 지수를 사용하여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6.2 FTA별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총 61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엄격성지수를 부여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복수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되는 경우 Estevadeordal(2000)에서와 같이 높은 수준의 엄격성지수가 부여되는 것을 따르고 있다. 한·칠레 FTA부터 한·미 FTA까지 HS 6단위 총 5,224개 품목에 대한 엄격성지수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³²⁾

FTA별 엄격성지수 분포를 비교함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모두 엄격성지수 4에 많은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ASEAN FTA가 약 79%로

32) 이용근, 안창달(2011), 전계서, pp.177-183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한·EFTA, 한·싱가포르, 한·칠레, 한·미 FTA가 각각 73%, 65%, 51%, 46%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엄격성지수 6이상인 품목은 한·칠레, 한·미 FTA가 각각 전체의 36%, 33%로 여타 FTA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한·싱가포르 FTA는 약 24%, 한·EFTA, 한·ASEAN FTA는 약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EFTA와 한·ASEAN FTA의 경우 여타 FTA와 달리 엄격성지수 7에 속한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개 FTA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RM”과 “WO”기준 때문이다. 한·EFTA FTA의 경우 “RM” 기준이 단독으로 적용되는 품목이 487개, “WO”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 23개가 있으며, 한·ASEAN FTA의 경우 “WO”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458개에 달한다.

5개 FTA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 분포에 대한 상자그림(Box Plot)에서 볼 수 있듯이 한·칠레와 한·미 FTA 그리고 한·EFTA와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분포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칠레와 한·미 FTA는 NAFTA 원산지규정에 기초하여 원산지규정을 마련한 만큼 그 분포 또한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EFTA와 한·ASEAN FTA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엄격성지수 4에 집중되어 그 분포가 유사해 보이나, 한·칠레, 한·미 FTA와 같이 원산지규정의 유형이 비슷한 것은 아니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시 통상 FTA별 엄격성지수 평균과 각 산업별 엄격성지수 평균을 비교하고 있다.

엄격성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평균이 모두 4와 5사이로, NAFTA와 EU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각각 5.1과 4.5임을 감안해볼 때 한국이 체결한 5개 FTA의 원산지규정 모두 NAFTA 원산지규정보다는 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에 한해서는 한미 FTA를 제외하고 나머지 FTA 원산지규정은 모두 EU FTA의 것보다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별로 살펴보면, 한·칠레 FTA부터 한·미 FTA까지 체결 순서대로 점차 완화된 원산지규정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미 FTA 원산지규정이 NAFTA

원산지규정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성지수 평균이 4.4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여타 FTA와 비교해서 한·미 FTA는 6단위 세 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이다[표5-7참고]. 이들 품목은 엄격성지수 2에 해당되며,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낮추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6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주로 일반기계 및 전기기계 산업에 적용되었는데, [표 5-6]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산업에 대한 한·미 FTA 엄격성지수 평균이 여타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이러한 차이가 전체 평균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EFTA와 한·ASEAN FTA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RM” 기준과 “WO” 기준은 주로 1차 상품과 1차 가공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엄격성지수 7에 해당된다. 이들 품목의 존재가 한·EFTA,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1차 상품을 제외한 경우 엄격성지수 평균을 구해본 결과 한·EFTA, 한·ASEAN,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 평균의 차이가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표 5-8 참고]. 그렇지만 여전히 한미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상품 및 1차 가공 상품을 제외할 경우 한·EFTA,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더욱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TA마다 산업간 엄격성지수의 평균 차이가 분명함을 알 수 있는데, 5개 FTA에서 모두 1차 상품, 가공 1차상품, 의류·직물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여타산업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산업의 경우 한·EFTA, 한·ASEAN FTA에서 마련된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1차상품은 한·EFTA와 한·미 FTA가 그리고 의류/직물은 한·칠레, 한·미 FTA가 가장 엄격하다. 한편 한·칠레, 한·미 FTA의 경우 엄격성지수 분포상으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산업별로는 엄격성 수준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기계와 전기기계 부분에서 양 FTA간 상대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6.3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활용률

활용률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재화의 전체 수입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³³⁾ 즉, 활용률은 특정 무역협정 혹은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활용률이 0%인 경우, 해당 FTA가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활용률이 100%인 경우는 FTA가 완벽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한 한국의 수입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의 FTA 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한 각각의 FTA 활용률을 측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현재 FTA가 발효되어 운용되고 있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그리고 한·ASEAN FTA 등 총 4개 FTA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왜곡을 피하기 위해 발효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활용률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이용 가능한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활용률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FTA에서 한국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과 한·ASEAN FTA와 같이 아직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세 인하/철폐가 시작되지 않은 품목은 활용률 계산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의 관세가 이미 0%인 품목도 활용률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6.4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실증연구

원산지 규정의 실증적 분석에서는 앞의 기존 연구논문에서 측정된 엄격성지수와 FTA활용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통해 한국이 체결한 FTA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스파게티보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수입특혜관세활용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양국간 일정한 조건(원산지규정 등)이 충족될 경우 특혜관세(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특혜관세활용율은 FTA체결로 인한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3) 김한성외(2008), 전계서 pp. 141-156

그러나 FTA체결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활용율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으로는 FTA규정의 적용의 복잡성이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또는 산업별로 복잡한 조건 충족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FTA체결 이후 나타나는 무역장애 또는 정체현상을 스파게티보울효과(spaghetti bowl effects) 또는 스파게티누들효과(spaghetti noodle effects)라 부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의 선진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국가들은 여러 선진 국가들과 양국 간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FTA규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너무 복잡하여 이들 동아시아국가들이 FTA를 활용하여 무역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FTA체결효과는 낮아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총칭하여 스파게티보울 효과라 한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파게티보울효과 발생되는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는 특혜관세비활용율을 스파게티보울효과(SPABO)를 측정하는 변수라고 가정하였음(이 자료는 김한성 외(2008)³⁴년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음). 그 이유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는 관세율의 저하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다는 것은 FTA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는 산업을 의미함)

$$SPAB_i = 100 - FTA\text{특혜관세활용율}_i$$

그리고 독립변수로는 엄격성지수(RI), 복잡성지수(CI), 실제적용관세율(TARIFF)를 사용하였다.(관련자료는 김한성 외(2008)년 자료의 RI와 CI자료를 활용하였음. 관세율은 2008년 기준 품목별 평균관세율자료를 활용하였다.

-엄격성지수(RI):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의 정도를 측절하여 이를 지수화하였다.

34)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연구보고서 0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복잡성지수(CI): 원산지규정의 종류가 많을수록 복잡성지수가 높게 되도록 하여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지수를 계산하였다.

-실제적용관세율: 산업별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율을 조사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 산업은 HS코드를 기준으로 분류된 15개의 산업(1차산품, 가공1차산품, 가공광물, 가죽제품, 고무화학, 금속제품, 기타운송기기, 비금속광물, 운송기기, 의류식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종이목재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네 개의 FTA를 적용하였으므로 총 60개의 횡단면자료가 활용되었다.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식을 추정하였고, 관찰치 중에서 이상치(outliers)에 해당되는 자료는 배제하였고 이에 따라 10개의 자료가 배제되어 총 관찰치는 50개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다음과 같은 식이 추정되었다.

$$SPABO_i = \beta_0 + \beta_1 RI_i + \beta_2 CI_i + \beta_3 TARIFF_i$$

(*i* 산업에 대하여 $SPABO_i$ 는 스파게티보울효과지수, RI_i 는 엄격성지수, CI_i 는 복잡성지수, $TARIFF_i$ 는 실제적용관세율을 말함)

추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PABO_i = -0.66 - 4.0RI_i + 36.7CI_i - 7.32TARIFF_i$$

$$(-0.89) \quad (-0.35) \quad (3.43) \quad (-2.50)$$

$$R\text{-}Sq = 25.8\% \quad R\text{-}Sq(adj) = 21.0\% \quad F = 6.33\% (p = 0.003)$$

Durbin-Watson statistic = 2.14158, ()의 값은 *t*값임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I_i 의 추정계수의 t 값은 3.43으로 P 값이 0.001로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TARIFF_i$ 의 추정계수의 t 값은 -2.50으로 P 값이 0.016으로 5%의 유의수준에서 충분히 유의한 값으로 추정되어 신뢰할만한 계수이다. RI_i 의 추정계수의 t 값은 -0.35로 유의하지 못하다. 횡단면자료인 관계로 설명계수가 25.8% 정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둘째, 복잡성지수(RI_i)는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복잡한 원산지규정은 스파게티보울 현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나타났지만 계수의 신뢰도가 낮아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하기 어렵다.

셋째, 유의한 계수 중 복잡성지수(CI_i)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복잡한 원산지규정은 스파게티보울현상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관세율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세율이 높을수록 스파게티보울효과를 상쇄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주체들이 FTA하에서도 높은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에는 수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스파게티보울효과는 줄어든다는 것을 말한다.

제 7 장 결 론

7.1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FTA 체결로 인한 원산지 규정의 특징과 검증 방법들을 소개하였고 이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배경과 실증적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스파게티보울현상이 존재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파게티보울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엄격성지수와 복잡성지수 그리고 관세율을 중요한 변수로 가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도 스파게티보울현상이 존재함을 밝히고자 하였고 얻어진 결과는 스파게티보울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함을 밝혔다.

7.2 연구의 정책적 함의

실증결과에서 얻어진 정책상의 함의는 다음으로 생각된다.

첫째, 원산지규정이 복잡할수록 스파게티보울 현상이 심각해지므로 원산지규정을 통일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인 노력과 기업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FTA하에서 관세율이 높다는 것은 각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FTA의 특혜관세를 활용하려는 욕구는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입품의 경우 국내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고는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특혜관세율을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관세의 국내산업보호효과가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FTA규정에 따라

관세율이 낮아질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스파게티보울 현상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영향요인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실증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동아시아국가들이 FTA를 선진국과 체결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스파게티보울 효과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통계자료가 2008년을 기준으로 실증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체결된 FTA의 스파게티보울현상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엄격성지수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방대한 작업이어서 이 엄격성지수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품목의 종류가 집계된 형태의 산업별로 측정된 결과를 이용한 것이 또하나의 한계점이다. 중요한 특정품목을 정하여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스파게티보울현상을 측정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러한 스파게티보울현상에 대한 외국의 실증연구와 우리나라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문성, 박순찬, 송유철, 윤미경, 이근 (2003),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준하(2008), 「한국-미국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通商法律』, 통권 제80호.
- 고용부(2004), “미통상정책상 국제주의와 지역주의의 전개 및 양면전략 연구”, 『통상법률』, 법무부.
- 고용부(2006), “우리나라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의의 및 결정기준 비교”, 『통상법률』, 제71호, 법무부.
- 고영제(2008),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과 시사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논문.
- 고준성(2003),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한국의 FTA 상품무역규정협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산업연구원.
- 권율·정재완·김완중·권경덕(2005), 『한·ASEAN 원산지규정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 김석오(2004),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령 원산지규정 해설”,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김세영·조국형(2012), “FTA원산지 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관세학회지, 13(2), pp.69-91.
- 김영귀 외 4인(2014), 『한국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대외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05.
- 김창태(1986), “NAFTA에서 나타난 FTA의 통상정책적 도구로서의 원산지규정”, 『충북개발연구』, 제9권 제1호, 충북개발연구원.

-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2008),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연구보고서 0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2007), 『FTA 원산지규정 활용가이드』.
- 방호경(2004), 『FTA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정책자료 0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명섭·조미진·이병문(2014), “한국 FTA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일관성 분석”, 무역학회지, 39(4), pp. 59-85.
- 박순찬(2004), “한국의 FTA 추진 전망과 과제”, 『세계경제』, KIEP.
- 서진교 외 4인(2008)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대외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05.
- 안덕근(2012),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대안』, 대외정책연구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2-02.
- 양평섭 외(2007),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근호(2013), “FTA특혜 원산지 검증제도”, 조세연구, 13(1), pp.2333-265.
- 정순태(2012), “원산지 규정의 문제점과 조화”, 관세학회지, 13(2), pp.93-110.
- 정인교(1999, 「지역무역협정의 무역굴절효과 추정방법 모색 - '특혜원산지규정'의 측면에서.『대외경제정책연구』, 제3권, 제2호, pp. 115~131.
-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정인교·조정란(2007), 『FTA 원산지기준의 파급영향 분석』,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 조미진·여지나·김민성(2008),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정란(2006), “엄격성지수(RI)를 활용한 FTA 원산지 규정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 10권, 제 1호, pp. 201-221.
- 채형복(2001), 『유럽연합(EU)의 원산지 제도』, 『무역구제』, 통권 제4호.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 최낙균 외(2007),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한홍렬(1992), “선진국의 교역장벽연구 2 원산지규정”, KIEP, 연구총서 07-08-01,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한국무역협회(2008),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무역협회.

<외국문헌>

- Bagwati Jagdish(1996), “WTO’s Agenda: Environment, Labor Standards, Competition Policy
 and the Question of Regionalism”, In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Challenges Ahead.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Bernard Hoekmen and Michel Kostecki(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from GATT to WTO, Oxford Univ Press, Oxford.
 Cadot, O. and J. de Melo, and A. Portugal-Perez(2006), “Rules of Origin for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Implications for AFTA of EU and US Regims.” CEPR
 Working paper.
 Cadot, O. and J. de Melo, and B. Tumurchudur(2006),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in EU and US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An Assessment.” World
 Trade Review, 199-225.
 Debra A. Delanger(1996), “The NAFTA and th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 Southwestern Journal of Law and Trade in the Americas Vol.3.
 Estevadeordal, A(2000),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No. 34, pp.
 141-200.

- Estevadeordal, A., J. E. Lopez-Cordova, and K. Suominen(2006), "How do Rules of Origin Affect Investment Flows?: Some Hypotheses and the Case of Mexico." INTAL-ITD Working Paper 15.
- Falvey, R. and G. Reed(1998), "Economic Effects of Rules of Origin."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34, pp. 209-249.
- Ishikawa, J., H. Mukunoki, and Y. Mizoguchi(2007), "Economic Integration and Rules of Origin under International Oligopol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8(1), pp.185-210.
- Ivan E. Kinston(1998), *The Economics of Rules of Origin*, in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 a Comparative Stud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 Kovatch. William J.(1999), "The NAFTA's Rules of Origin, Certificate of Origin,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 The Disadvantage to Small Businesses," *The Transnational Lawyer* Vol.12.
- Ju, J. and K. Krishna(2005), "Firm Behaviour and Market Access in a Free Trade Area with Rules of Origi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8, pp. 290-308.
- Krishna, K. and A. O. Krueger(1995), "Implementing Free Trade Agreement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A. V. Deardoff and R. M. Stern eds.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pp. 149-187.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rueger, A. O.(1999), "Free Trade Agreements as Protectionist Devices: Rules of Origin." , NBER Working Paper No. 4352, Cambridge, MD.
- Moshe Hirsch(2003), "Rules of Origin as Trade or Foreign Policy Instruments? The European Union Policy on Products Manufactured in the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and the Gaza Strip",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6).
- Kumimoto, R. and G. Sawchuk(2005), "NAFTA Rules of Origin." Discussion paper. Policy Research Initiative. Canada.
- Rosellon, P. L(2000), "The Economics of Rules of Origin."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9. pp. 397-425.

Thornton, John and Alessandro Goglio(2002), Regional Bias and Intra-regional Trade in Southeast Asia, Applied Economic Letters, Vol 9.

Vermulst, E and Dacko, C(2004), "Rules of Origin in the European Union: Practical aspect." Asian Development Bank (ADB).

